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02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허 영·김태선·위성곤

박상혁 · 장철민 · 박 정

박지원 · 임호선 · 윤준병

홍기원・황 희・전재수

김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놀이기구가"를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수영장이"로, "놀이터로서"를 "시설로서"로 한다.

- 1의2. "어린이수영장"이란 어린이가 물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제11조 중 "어린이놀이기구를"을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수영장을"로 한다.

제15조의2 중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신고 및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1조의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1 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 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어린이수영장"이란 어린
	이가 물놀이에 이용할 수 있
	는 수영장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
	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
	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2
<u>어린이놀이기구가</u> 설치된 실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내 또는 실외의 <u>놀이터로서</u>	<u> 수영장이시설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u>.</u>

3. ~ 9. (생략)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
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
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u>어</u>
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
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
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 용한 물놀이형 <u>어린이놀이시설</u> 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 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 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3. ~ 9. (현행과 같음)
제	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u>o</u>
	린이놀이기구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
	는 어린이수영장을
제	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u>어린이놀이기구</u>
	또는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u> 어린이놀이시설</u>